

## 총회본부 처무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처무의 대강을 정하여 부과된 임무를 능률적이며 체계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등(이하“총회”라 한다)에 적용된다.

### 제2장 총회 취업세칙

#### 제3조 (취업세칙)

1. 총회 본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별도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취업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2. 이 세칙은 총회의 운영과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임금, 퇴직, 퇴직급여, 포상 및 징계,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이 세칙은 총회 처무규정의 세부 적용을 위한 것이며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세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라 해 기관 직원의 동의 절차와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로 한다.

#### 제4조 (적용범위)

1. 이 세칙은 총회 헌법과 규칙,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 제3장 직원의 채용

### 제5조 (채용)

총회는 취업세칙 제3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취업세칙 제2장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 제6조 (보직)

채용된 직원은 취업세칙 제25조(배치, 전직, 승진) 각 호에 따른다. 단, 총무는 필요에 따라 겸직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 (해직)

총회 직원은 취업세칙 제7장(퇴직, 해고 등)이 정한 각 호에 따라 퇴직 또는 해고될 수 있다.

### 제8조 (인사위원회)

총회는 취업세칙 제69조(징계)에 따른다.

## 제4장 복무와 근로조건

### 제9조 (복무상 의무)

직원은 취업세칙 제3장(복무)에 따른다.

### 제10조 (근로조건)

직원은 취업세칙 제5장(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해 있으며, 휴일과 휴가, 모성보호 및 알가정 양립 지원에 관해서는 취업세칙 제5장(근로조건)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장 출장 및 여비

### 제11조 (출장)

총회는 취업세칙 제21조(출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제6장 사무인계

### 제12조 (인계인수)

1. 직원은 퇴직, 휴직, 직책 변경의 명을 받았을 때 그 담당 사무의 서류 및 비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2. 금전 또는 물품의 출납 계산과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의 인계인수는 정리된 장부의 잔고와 재고를 현금 예금 및 실물과 대조하여 명확한 인계를 하여야 한다.
3. 사무인계, 인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단, 회계에 관한 인계인수는 감사가 입회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장 임 금

### 제13조 (원칙)

총회는 취업세칙 제6장(임금)에 따라 총회의 경영상태, 직원의 능력과 경력, 직원의 생계보장과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임금이 되도록 책정한다.

### 제14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

직원의 임금 계산 및 지급 기준은 취업세칙 제5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따른다.

### 제15조 (수당과 기타임금)

1. 휴업수당은 취업세칙 제56조(휴업수당)에 따른다.
2. 대기발령자의 임금은 취업세칙 제57조(대기발령자의 임금)에 따른다.
3. 병가 또는 휴직자 등의 임금은 취업세칙 제58조(병가 또는 휴직자 등의 임금)에 따른다.
4. 징계처분 받은 자의 임금은 취업세칙 제59조(징계처분 받은 자의 임금)에 따른다.

## 제8장 개정 절차

### 제16조 (개정)

이 규정은 실행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